

반성폭력 회칙 TFT 회의 안건지

차수	2차 정기
일시	18. 5. 3 10 : 00
장소	총학생회실

성평위장 박지수	총학생회장 조승현	부총학생회장 이송주	자연대 학생회장 민현기	사과대 부학생회장 정수형
○	X	○	○	X

□ 보고 안건

1. 성평위 제안 반성폭력 회칙 (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) 검토

<제 1장 제안>

- 제목 변경 : 사건해결보다는 문화 확산을 위해서
- 총칙 : 목적 부분 절차, 담당기구 명시를 삭제
- 대상 : 총학생회의 모든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[예를 들어 휴학생, 졸업생(졸업 이전 사건 발생 경우)] 대상에 적용 될 수 있도록 수정
- 2조 1항에 적용 범위 명확히 (가장 마지막에 참조해야하는 세칙, 각 과에 세칙이 있다면 먼저 적용, 검토)

<제 2장 제안>

- 성폭력 개념 : 조금 더 구체화 수정.
- 성폭력의 범위를 넓게 책정하는 것 (이는 많은 학생들이 가해자로서 낙인이 찍히는 것이 학생자치가 해야 할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.) -> '공동체가 성폭력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.'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.
- 신고기구 = 성평위 -> 성평등을 위한 노력 주체가 하나로 단일화 돼. 각 과, 각 단위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.

□ 논의 안건

1. 타 학교 반성폭력 회칙 / 위원회 세칙 검토 및 논의

건대 : 인권센터 없음 성폭력관련해서 학생회가 모두 다뤄,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회칙을 만들었음. 108조 징계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있어.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. 참고하여 3장 수정할 예정.

연대 : 우리학교와 상황이 매우 유사함. 인권센터, 총여학생회 (like 중대의 성평위) 존재함. 의무로 넣기 보다는, 즉 내규가 아닌 회칙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참고하기 좋을 듯.

둘을 참고하여 중앙대 반성폭력 회칙을 수정할 것임.

2. 성평위 제안 반성폭력 회칙 논의 (1장, 2장)

- 1장 1조 (목적)

1)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자연대 학생회장

(1) 반성폭력 회칙을 '회칙'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은가?

: 교내에 두 가지의 회칙(중앙대 학생회칙 + 반성폭력회칙)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, 세칙으로 규정을 하고 '학생회칙 내부에 이는 ○○○세칙을 따른다.'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. 이는 회칙으로서 힘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판단. 중앙대 학생회칙과 동등한 위계로서 존재한다면 사문화 될 수 있다고 생각.

-> 세칙으로 변경될 시, 회칙으로서의 무게감과 권위를 떨어트릴 수 있고, 사문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, 시간이 지나며 회칙이 아닌 회칙 밑의 세칙으로서 적용될 수 있음. **세칙으로서의 격하나 사문화의 위험을 덜 수 있는 워딩에 대해서 중운위 차원에서 위계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.** 또한 어떠한 위계로서 존재하든지 간에 중앙대 학생회칙에 반성폭력회칙을 참고할 수 있는 내용 명시 필요.

- 1장 2조 (대상)

1) 부총학생회장

(1) '활동했던' 이라는 말이 다소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.

-> '공동체의 실질적 일원인 경우'로 수정.

- 1장 3조 (학생회칙의 해석)

1)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자연대 학생회장

(1) '책임자의 재량에 따르면' 이라는 말

: 책임자를 한명으로 두는 것, 그리고 그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 위험부담을 크게 하는 것 아닌가 우려

-> **최종접수인(용어 통일을 위해 7조 7항에 나오는 표현 이용) 및 사건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** 등으로 수정하여 한명에게 가는 부담과 책임을 분산시킨다.

- 2장 4조 (성폭력의 개념)

1) 부총학생회장

(1) "성적 자기결정권을 '중대하게' 침해하였는가?"에서 중대하게가 너무 주관적이다.

-> '중대하게'가 없다면 피해자 중심주의가 과도하게 해석(오용)될 경우가 있어. 이는 성폭력의 개념을 무겁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함.

- 2장 5조 2항 (공동체의 의무)

1) 성평등위원장

(1) 대제목에 '의무 -> 책임'으로 변경

-> 의무라는 말이 너무 강경하여 보여 단어는 순화하되, 그 의미는 퇴색되지 않도록 변경.

(2) 성평등 및 인권 질의서에 각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응답할 의무를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. 그러면 선거 시행세칙과 롤미팅, 반성폭력회칙 중 어느 곳에 명시해야하는가?

-> 선거시행세칙에도 조항을 추가하려면 새로운 조항이 필요할 가능성 농후, 하지만 반성폭력회칙에만 명시될 시 의무로서 적용할 수 없음. **책임으로서의 의미**만을 담기 위해서 반성폭력회칙에만 명시하여도 괜찮다고 판단.

-> 성평위가 만든 질의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'중앙선거관리위원회(중앙운영위원회)에서 검토를 거친다.' 추가. (**중앙운영위원회 추가 이유 좀 더 시간을 갖고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게하기 위해.**) 다음 회의 보고안건으로 수정 후 이를 다시 피드백 진행

2) 부총학생회장

(1) '작성 및 공표'에 시기가 존재했으면 좋겠다.

(2) 회칙이라는 이름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의문

: 단위별로 반성폭력 회칙의 수준을 정해진 것인가?

-> 회칙의 수준을 정해도 괜찮고, 자율로 해도 괜찮음. 어쨌든 반성폭력회칙에 이 수준을 명시화해야함.

3) 중앙운영위원회 의원 자연대 학생회장

(1) 6조 3항 사례 등을 추가하여 구체화 됐으면 좋겠음. '최대한 협소하게' 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음

-> 헌법을 참고하겠음. 무고죄로 역 고소 된 사건들을 확인할 필요

- 2장 7조 3항 ~ 6항 (신고기구 등)

1) 부총학생회장

(1) 7조 7항 해설의 마지막 부분에 '직무대행자' 관련 규정이 없는 단위체들이 많아 우려

-> 직무대행자 또는 '공동체 합의를 통해 선출된 직무대행자' 수정하겠음.

- 기타

1) 중앙운영위원회 의원 자연대 학생회장

(1) '아웃팅'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어떤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는가?

->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권리에 해당될 수 있을 것. 해설에 '아웃팅'과 관련된 사례를 추가하겠음.

(2) 성평등 회칙을 개정하는 방식에 대한 명시도 필요.

-> 다음 회의까지 추가하겠음.

□ 기타 안건

1. 중앙운영위원회 피드백

2. 다음회의

- 5월 17일 9시 30분 시작